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보험급여팀장 고영옥(6572) / 팀원 이승아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942호

시행일자 2024. 9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임신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4063 (2024. 9. 13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국군의 날(2024. 10. 1.) 임신공휴일 지정에 따른 임신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해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

- 임신공휴일('24.10.1.)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 적용될 수 있음
-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,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음(이러한 조치는 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·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)

#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.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